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및 장기 아시아 LNG 계약에 따른 ‘불가항력’

유가와 현물 LNG 가격 간의 디버전스 증가세는 장기 LNG 계약 중인 아시아 매수자가 가격 조정을 노리는 동시에 그 밖에 전용 권리 및 수량 자유 선택과 같은 형식의 LNG 계약 유연성을 추구할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수자 시장의 상업적 현실과 낮은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 정책으로 결국 계약 조건에 많은 ‘매수자 친화적’ 변경이 생긴 한편, ‘불가항력’(FM; force majeure) 조항은 비교적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대개는 구래의 형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돌발은 그로 인해 매수자의 LNG 계약 이행이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는 것을 근거로 FM을 주장하는 일부 중국 매수자에 관한 보고가 제기되면서 해당 조항의 한계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는 매도자에 관한 보고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M은 무엇이고 아시아의 LNG 매수자와 매도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FM이란?

영국 법(장기 아시아 LNG 계약 시 일반적으로 선택됨)에 따르면 FM은 관련 계약에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 범위까지 제공되는 일종의 구제책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각 FM 조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릅니다. FM 조항에는 표준 형식이 없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LNG 계약의 경우 일반 조건에 있어서 대개는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FM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 “합리적이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 합리적으로 그 당사자의 통제 범위 내에 들지 않거나, 예방 또는 완화될 수 없었던 그리고 일부 측면에 있어 이행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연시킨 FM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FM 조항에 그러한 사건의 비포괄적 목록뿐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도 FM으로 적격하지 않은 사건의 목록도 규정됩니다.
- FM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즉시 해당 FM 사건을, 그에 따라 지연되거나 못하게 된 이행을, 그러한 지연이나 저지의 예상 기간을 통지하고 이행 재개차 취할 조치에 관한 통지문을 즉시 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FM 사건을 확인할 조사 권한을 갖습니다.

연락처 정보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십시오.

Justin Williams

이메일

런던

+44 20.7012.9660

Paul Greening

이메일

싱가포르

+65 6579.9070

Michael Joyce

이메일

싱가포르

+65 6579.9020

Conor Mc Stravick

이메일

런던

+44 20.7012.9822

- 쌍방은 대체 이행을 모색하여 준비합니다.

상기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으나 대체 이행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FM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청 당사자가 매수자인 경우 그가 LNG에 대해 갖는 의무는 FM의 조건이 충족되는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는 그 외의 경우라면 매수자가 취하였을 LNG를 제삼의 매수 당사자에게 판매할 자격이 있습니다.

FM의 조건이 더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FM 사건이란?

일반적으로, FM 조항에 명시된 FM 사건의 비포괄적 목록에는 명확히 밝혀진 기상이변 사건, 자연재해, 민간 소요, 제재, 방사능, 파업, 해당 국가에서 널리 시행 가능한 정부 당국의 조치 및 법률상의 변동과 같은 사태가 포함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잦으나 그러한 목록은 대체로 비포괄적이므로 그토록 명백한 참조 자료의 부재도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M 사건이 될 수 없는 사태의 목록에는 종종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다른 매도자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는 매수자의 능력
- LNG 또는 천연가스 시장이나 수요의 변동 및
- 수요 관점 고객 시설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및
- 요청 당사자에게 한해서 혹은 주로 해당하는 정부 당국의 조치

코로나바이러스 돌발은 FM으로 적격합니까?

이는 각각의 구체적인 FM 조항의 자구에 그리고 사실 내용이 필수 요소를 충족하는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돌발이 FM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은 예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각 계약의 조건에 따라, 돌발을 통제하고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부 조치가 결과적으로 인수 터미널의 강제 폐쇄로 이어지는 경우와 FM의 적절한 통지를 받고 대체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FM 구제책이 제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격하게 FM의 모든 필수 요소가 확실히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또한, 수요 관점의 문제는 매수자가 LNG를 취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내 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가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저장 시설이 LNG 수송선 화물창 전체를 채우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빨리 정화되지 않는 경우 쌍방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이는 매수자의 통제 범위 밖이라서 계약 이행을 못 하게 하는 사건이나 매한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관련 FM 조항에서 가스의 수요 변동이나 수요 관점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배제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FM으로 적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돌발에 있어 더욱 부각되는 점은 FM이 LNG 계약상 필수 조항이라는 것과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 보호에 있어 입안 단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FM 공표의 대안이 있다면?

아시아에서 더 최근에 입안한 장기 LNG 계약에는 매수자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수의 다른 잠재적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감량권 행사, 관련 연간 또는 분기 납품 프로그램 수정, 취소 권한이나 무계약 항구로의 화물 진로 변경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 중 일부에는 통지 기간으로 인해 효과를 보기에 확실히 더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하나 일부 수단은 예컨대 전용처럼 해당 입안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범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FM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는 매수자는 구제를 받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 중 하나 이상을 행사하는 것은 화물을 취하지 못하는 것과 의무인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적절한 보상 권한 조항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 사항 행사는 특히 장기 계약 가격에 비해 현재의 현물 가격이 낮을 때 의무인수 위험을 덜고자 현물 가격에 화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정하고자 세세히 계약을 검토한 후 그에 동의하지 않는 매수자와 매도자는 늘 줄을 잇기 마련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최선인 보호책은 초기에 해당 검토를 실행하고 FM 및 기타 구제책과 관련한 그들의 권한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akingump.com